

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‘취급 은행 확대’

- 우리은행(4.24일)에 이어 국민·신한·하나은행,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-

-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·신한·하나은행,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 - ‘대환 대출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,
 - 연소득 7천만원(부부합산)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 공사(HF)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.
 -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,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 - 오늘(5.15일)부터는 국민·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, 하나은행은 5.19일, 농협은 5.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.
- ※ 대표번호 : 우리은행(02-2002-5374), 국민은행(02-2073-3421), 신한은행(02-2151-3528), 하나은행(02-3709-6260), 농협(02-2080-3378)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서울보증(SGI)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백두진 (044-201-3339)
	우리은행 주택기금부	책임자	부 장	오수용 (02-2002-3533)
		담당자	계 장	이한빈 (02-2002-5374)
	국민은행 주택기금부	책임자	수석차장	이상훈 (02-2073-3350)
		담당자	차 장	유지현 (02-2073-3421)
	신한은행 디지털개인고객부	책임자	부부장	권혁정 (02-2151-2773)
		담당자	과 장	정형하 (02-2151-3528)
	하나은행 정책금융부	책임자	부 장	박용호 (02-2002-1269)
		담당자	과 장	김현태 (02-3709-6260)
	농협 개인고객부	책임자	팀 장	김길호 (02-2080-3411)
		담당자	과 장	한광희 (02-2080-3378)

1. 대환대출은 지난 1월부터 출시한 저리대출과 어떻게 다르고 전세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?

- ☐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(1.9 출시)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으나,
- ☐ 이번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 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2. 대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은 무엇이며, 5개 취급은행별로 금리 등 대환 조건이 다른 것 아닌가요?

- ☐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전부 대환 대상이 되므로, A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 은행에서 대환받을 수 있음
- ☐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수탁기관이므로 금리,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음

3. 대환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?

- ☐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(보증금의 80% 이내)이며,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.2~2.1%가 적용됨

< 연소득 - 보증금별 적용금리 >

연소득 \ 보증금	1.4억원 이하	1.7억원 이하	1.7억원 초과
5천만원 이하	연 1.2%	연 1.3%	연 1.5%
6천만원 이하	연 1.5%	연 1.6%	연 1.8%
7천만원 이하	연 1.8%	연 1.9%	연 2.1%

4.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된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요?

- ☐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 충족 후 대환 신청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(콜센터 1533-8119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

※ 대표번호 : 우리은행(02-2002-5374), 국민은행(02-2073-3421), 신한은행(02-2151-3528), 하나은행(02-3709-6260, 5.19부터), 농협(02-2080-3378, 5.26부터)

5.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?

- ☐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는 세무서(홈택스)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,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(또는 연금수령통장)로 소득인정 가능